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미래고등학교 컴퓨터용융기계과 용접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미래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문골길 54)

다. 공사물량: 미래고등학교 창조관 용접실 등 기계설비공사(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사.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21,554,000	121,554,000	110,503,636	11,050,364	0	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 본 공사는 용접 실습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스 등 설치공사로 불연자재 사용을 포함하여 자재·성능·안전구조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특히 제2장 기계시방서, 제3장 특기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수)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이후	미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에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원주시) 대상공사입니다.

-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됩니다.
-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바.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자.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미래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747-6163)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 본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제출은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나. 견적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 기타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전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를 89.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공고문 11. 가 참고

-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입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를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1.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A값)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0	0	1,743,635	574,141	0	0	2,317,77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약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 합의서 제출)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

-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미래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3-747-6163)
- 다.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미래고등학교 홈페이지(mirae.gwe.hs.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미래고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미래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미래고등학교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미래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연락처	주소	☐ 단체 ☐ 기타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일

미래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